

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(국문)

제 호

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

1.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:
2.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:
3. 소 재 지:

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정보 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직인